

# 11. 버뮤다(Bermuda)

## ●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(가입자/자영자/사용자)	(사회보험) 34.47B\$/68.94 B\$/34.47B\$ (의무직업) 5% / 10% / 5%	(사회보험) 35.92B\$/71.84B\$/35.92B\$ (의무직업) 5% / 10% / 5%	(사회보험) 근로자1.45B\$ ↑ 자영자2.9B\$ ↑ 사용자1.45B\$ ↑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200,000B\$ / 없음	200,000B\$ / 없음	-
연금수급 개시 연령	65세	6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484주	484주	-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67년(노령 및 유족연금)
- **현행법** : 1970년(노령 및 유족연금), 1980년(장애), 1998년(기업연금, 2000년 시행), 1999년(국가연금제도규정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
- 의무직업연금
- 사회부조

## 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 - **당연적용**
    - 주당 4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18세 이상 근로자 및 자영자
    - 26주를 초과하는 연속 소득활동에 고용된 일시 거주자
  - **임의적용** : 이전에 당연적용 가입한 자
  - **적용제외** : 주말 또는 방학 동안 근로하는 26세 이하 정규 학생

### ○ 의무직업연금

- 근로자 : 해당연도 현재 사용자를 위해 720시간 이상 근로한 23세 이상의 버뮤다 시민 또는 시민의 배우자
- 자영자 : 연간소득이 B\$20,000을 초과하는 23세 이상의 버뮤다 시민 또는 시민의 배우자

### ○ 사회부조 : 버뮤다 거주자

## 4

### 재원조달

### ○ 가입자

- 사회보험 : 주 B\$35.92, 65세 이상은 보험료 부담 없음
- 의무직업연금 : 적용소득의 5%(초과근로수당 제외)
  - 보험료 부과 연 최고소득 : B\$200,000
  - 보험료는 최소 월 1회 납부됨
- 사회부조 : 없음

### ○ 자영자

- 사회보험 : 주 B\$68.94, 65세 이상은 B\$35.92
- 의무직업연금 : 신고 소득의 10%
  - 희망하는 경우 추가 납부 가능
  - 연간 신고 소득에 대한 최대 의무 보험료 : B\$5,000
  - 보험료는 최소 월 1회 납부됨
- 사회부조 : 없음

### 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주 B\$35.92
- 의무직업연금 : 적용 소득의 5%
  - 보험료 부과 연 최고소득 : B\$200,000
  - 보험료는 최소 월 1회 납부됨
- 사회부조 : 없음

### ○ 정부

- 사회보험 : 없음, 사용자로서의 보험료는 납부
- 의무직업연금 : 없음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## ○ 노령급여(사회보험)

## • 노령연금

- 65세 도달; 모든 연도 가입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평균 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 또는 납부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적어도 484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 또는 납부인정 기간 필요
-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근로 능력 상실의 고통을 받은 각 완성된 납부대상 주(week)에 대하여 특정 조건에 따라 보험료 납부로 인정될 수 있음
- 정상 퇴직연령 미만의 여성 유족배우자가 사회보험 유족연금을 수급한 각 완성된 납부대상 주(week)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부 인정
- 여성 유족배우자는 사망한 남편의 보험료 납부 이력의 1년까지 자신의 납부이력으로 대체할 수 있음
- 퇴직 조건 불필요

• 부분연금 : 65세 도달, 모든 연도 가입기간에 대하여 평균 25~49주의 보험료 납부 또는 납부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적어도 484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 또는 납부인정 기간 필요

• 노령일시금 : 65세 도달; 최소 1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으나 사회보험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
※ 사회보험 노령급여 해외 지급 가능

## ○ 노령연금(의무직업연금) : 65세 도달, 해외 지급 가능

## ○ 비기여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65세 도달; 사회보험 노령급여 수급자격이 없고, 청구 직전 20년 중 적어도 10년 이상 연속하여 버뮤다에 거주한 시민

## ○ 장애급여(사회보험)

## • 장애연금

- 18세 이상 64세 이하여야 하며, 연속 52주 이상 지속된 장애로 판정되어야 함
- 장애 발생 직전에 고용 상태여야 하며 의료적으로 근로 능력 상실 입증되어야 함
- 모든 연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평균 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 또는 납부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적어도 150주 이상 보험료 납부 기간 필요
-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근로 능력 상실의 고통을 받은 각 완성된 납부대상 주(week)에 대하여 특정 조건에 따라 보험료 납부로 인정될 수 있음
- 정상 퇴직연령 미만의 여성 유족배우자가 사회보험 유족연금을 수급한 각 완성된 납부대상 주(week)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인정
- 여성 유족배우자는 사망한 남편의 보험료 납부 이력의 1년까지 자신의 납부이력으로 대체할 수 있음

## • 부분연금

- 18세 이상 64세 이하여야 하며, 연속 52주 이상 지속된 장애로 판정되어야 함

- 장애 발생 직전에 고용 상태여야 하며 의료적으로 근로 능력 상실 입증되어야 함
- 모든 연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25~49주의 보험료 납부 또는 납부인정 기간 필요

※ 사회보험 장애연금 해외 지급 가능

○ **장애연금(의무직업연금)** : 신체적, 정신적 사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판정 필요, 해외 지급 가능

○ **비기여장애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**

- 영구적 근로능력 상실 판정 필요
- 사회보험 장애급여 수급자격이 없고, 청구 직전 적어도 10년 이상 버뮤다에 거주
- 지정된 의료진이 장애 정도 평가

○ **유족급여(사회보험)**

- 유족연금
  -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
  - 수급권자는 사망자와 사망 당시 혼인한 유족 배우자이며, 재혼이나 동거 시 지급 정지
  - 부분연금 : 사망자가 부분노령 또는 부분장애연금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에 지급
  - 자녀보조금 : 18세(정규학생인 경우 26세) 미만 피부양 자녀 각각에 대해 지급

※ 유족연금 해외 지급 가능

- 유족일시금
  - 사망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사회보험 유족연금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  - 수급권자 : 사망 당시 사망자와 혼인한 유족배우자이며, 유족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정규학생인 18세 미만 부양 자녀

○ **유족급여(의무직업연금)**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직업연금의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- 수급 유족은 사망자가 지정

## 6

#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**노령급여(사회보험)**

- 노령연금 : B\$244.95(월 B\$1,064.34) + 484주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26주당 B\$6.26
- 부분연금
  - 연 평균 보험료 납부한 주가 25~29주인 경우, B\$532.19(완전연금의 1/2)
  - 연 평균 보험료 납부한 주가 30~34주인 경우, B\$638.62(완전연금의 3/5)

- 연 평균 보험료 납부한 주가 35~39주인 경우, B\$745.06(완전연금의 7/10)
- 연 평균 보험료 납부한 주가 40~44주인 경우, B\$851.50(완전연금의 4/5)
- 연 평균 보험료 납부한 주가 45~49주인 경우, B\$957.93(완전연금의 9/10)
- 노령일시금 :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총액 지급

○ **노령연금(의무직업연금)** : 특정 직업연금 제도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평균 소득 또는 가입자의 누적된 자본금에 기초하여 산정

○ **비기여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**

- 연간소득이 B\$4,000 이하인 경우, 주 B\$115.68(월 B\$502.66) 지급
- 연간소득이 B\$4,000 초과하는 경우, 주 B\$112.17(월 B\$488.40) 지급

○ **장애연금(사회보험)** : 주 B\$163.27(월 B\$709.45) 지급

- 부분연금 : 각 연도의 평균 보험료 납부 주수에 따라 완전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

○ **장애연금(의무직업연금)** : 연금액은 특정 직업연금 제도 규정에 따라 산정

○ **비기여장애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** : 주 B\$112.40(월 B\$488.40) 지급

○ **유족급여(사회보험)**

- 유족연금 : 주 B\$241.57(월 B\$1,049.68) 지급
- 부분연금
  - 연 평균 보험료 납부한 주가 25~29주인 경우, B\$532.19(완전연금의 1/2)
  - 연 평균 보험료 납부한 주가 30~34주인 경우, B\$638.62(완전연금의 3/5)
  - 연 평균 보험료 납부한 주가 35~39주인 경우, B\$745.06(완전연금의 7/10)
  - 연 평균 보험료 납부한 주가 40~44주인 경우, B\$851.50(완전연금의 4/5)
  - 연 평균 보험료 납부한 주가 45~49주인 경우, B\$957.93(완전연금의 9/10)
- 자녀보조금 : 수급자격이 있는 각 자녀 당, 주 B\$24.44(월 B\$106.20)의 추가 수당 지급
- 유족연금은 26주간 지급하거나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18세(전업 학생 26세) 도달 시 까지, 유족배우자가 50세 초과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평생 지급
- 유족일시금 :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총액 지급

○ **유족급여(의무직업연금)** :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망자의 납부보험료, 적립금 또는 누적보험금에 기초한 연금시스템에 따라 산정; 사망자가 사망 당시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직업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됨

- **재정부(Ministry of Finance)**
  - <https://www.gov.bm/ministry/finance>
  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의 전반적 감독
  
- **사회보험청(Department of Social Insurance)**
  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의 관리 운영
  
- **연금위원회(Pension Commission)**
  - <http://www.pensioncommission.bm>
  - 의무직업연금제도의 감독 및 규제

<2019년 ISSA 자료>